

졸업인증제 운영 규정

제4조(인증요건) ① 제2조에 따른 대학공통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사회봉사
2.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(19학번 입학생). 다만, 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학교현장교사윤리 교과목(19학번 이후 입학생)을 이수해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개정사항 중 “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” 교과목 이수는 20학번부터 전 공필수로 이수함에 따라 19학번은 졸업인증제로 적용한다. 다만, 사범대학은 “학교현장교사윤리” 교과목 이수를 19학번 이후부터 졸업인증제로 적용한다.